##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46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이병훈·오영환·전혜숙

김경만 · 홍성국 · 박성준

양정숙 • 윤미향 • 천준호

권인숙 · 남인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 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 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0조제2항). 법률 제 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진단
	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